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7일, 김태호 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6.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1차 교육위원회(2025.1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호 의원)

현행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조리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해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영양교사 1명만 배치하고 있어 36학급 이

상의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단 1명의 영양교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4,531억 5,000만원(연평균 906억 3,0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므로, 소요 재원 마련방안에 대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정혜경 의원,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 김태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문수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